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91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서영교・인재근・이형석

김영배 · 김영호 · 양경숙

유준병·김민석·조승래

이정문 · 한병도 · 박홍근

양정숙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청원법」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 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 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청원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 마련으로 청원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 1) 온라인 청원의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고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2) 온라인 청원실시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나. 공개청원 도입으로 청원처리의 공정성 강화
 - 1)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 개청원으로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2) 공개청원 접수 시 청원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청원으로 결정된 경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공 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3) 공개청원 여부 결정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하고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0조).
- 다.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 1) 접수된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청원처리 결과 등의 심의를 위해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 2)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 청원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3) 청원조사방법,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 청원의 심의 및 결과 통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라.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 강화
 - 1) 청원기관 중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1호).
 - 2) 청원의 불수리를 청원 처리의 예외로 변경하고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청원처리의 예외에 포함 함(안 제5조).
 - 3) 청원기관은 소관법령을 정비하고,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 주관 부 서 및 담당인력을 적정하게 두어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 록 함(안 제6조).
 - 4)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청원인이 취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5) 청원인은 청원기관의 청원 공개 부적합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원기 관은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1조).
 - 6) 청원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청원기관의 청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7)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 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② 국회 및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2 항, 제12조,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 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제4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 1. 피해의 구제
 -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5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 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

핤

- 제6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 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 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 제7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 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 소관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 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 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

료를 붙일 수 있다.

- 제11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 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 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접수·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

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15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
 -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 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청원기관의 장은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 제16조(청원의 취하) 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

원을 취하할 수 있다.

4. 감정의 의뢰

- 제17조(청원의 조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 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 게 처리할 수 있다.
-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회신기간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 제20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 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21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 처리기간이 경

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22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점검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3조(청원의 사후관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4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닌된다.

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3조(공개청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